

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

의안번호	3
------	---

제출일자 1998. 1. 14.

제 출 자 거 창 군 수

■ 개정이유

-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읍.면에 위임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 하고
-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.보완하기 위함

■ 주요골자

- 신규 읍.면 위임 업무
 -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(사회복지과 소관)
 -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신고(환경위생과 소관)
- 군 환원 업무
 - 구호환자 진료신청 · 쓰레기 매립장 관리
- 관련 법.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명칭변경
 -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용자금 상환
⇒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용자금 상환
 - 농지전용 (3,300㎡ 이하) ⇒ 농지전용 신고 (농지법 시행령 제41조)
- 조례 통.폐합
 - 거창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통합
- 삭 제
 -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용자금 상환
 - 농가, 비농가 증명
 -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 (농지전용 신고로 가름)
 - 군 농기계 관리
 - 별표 2 [군 및 타 읍.면의 중계민원담당관에게 위임하는 사무]
- 기타 위임 사무를 실과별로 재분류

■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
-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5조, 동법시행령 제11조, 동법시행규칙 제4조

거창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

거창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을 삭제한다

별표 1 [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사무]를 별지와 같이 하고, 별표2 [군 및 타읍면의 중계민원담당관에게 위임하는 사무]를 삭제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는 폐지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위임사항) ① (생략)</p> <p>② <u>군 및 타 읍.면의 중계민원담당관에게 권한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.</u></p>	<p>제2조 (위임사항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(삭제)</p>

[별표 1]

거창군 사무의 읍.면 위임사무

소관별	위임사무명	근거 및 적용법규	비 고
기획감사실	1. 외국인 등록표 등의 작성관리 및 채류지 변경신고	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	
문화공보실	1. 관광지 불법시설물, 잡상인 단속	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 2	
“	2.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판매. 대여업자 지도.감독	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	
“	3. 공연신고	공연법 제7조 제1항	
“	4. 공연장 및 공연자의 지도.감독	공연법 제24조 제1항	
내 무 과	1. 읍.면 소속직원의 근무지정	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	
“	2. 읍.면 소속직원의 출장명령	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	
“	3. 읍.면 소속직원의 당직명령	거창군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7조	
“	4. 읍.면 소속직원의 출장 복명서 처리	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	
“	5. 읍.면 소속직원의 청가상신 여행 및 청원 신고처리	거창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4조	
“	6. 읍.면 소속직원의 사무인계	거창군공무원근무규칙 제7조	
“	7. 읍.면 문서보관 및 폐기 (다만 폐기할 때는 사전 군수에게 보고)	거창군문서창고관리규정 제6조, 제9조	
“	8. 적십자회비 부과.징수	행정지시	
“	9. 읍.면장의 관내출장	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	
“	10. 주민등록 업무 (다만 법 제17조의 8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, 법 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사항,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외,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.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수도 할 수 있다)	주민등록법,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	

소 관 별	위임사무명	근거 및 적용법규	비 고
내 무 과	11. 읍.면 소속공무원에 대한 당해 읍.면내 전보	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	
"	12. 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한 학령아동 취학명령 사무와 전출입 아동에 대한 학령부 등본 및 취학통지서 교부사무	교육법 제96조	
"	13. 자동차 주소 변경등록 (도내 주소변경 등록에 한함)	자동차관리법 제11조	
사회진흥과	1. 주민부담 30%이상인 공사집행		
"	2.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 관리조례에 의한 융자금 상환	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	
재 무 과	1. 도.군세 징수	지방세법 제53조, 거창군세조례 제6조	
"	2. 도.군세 징수유예 신청	지방세법 제53조, 거창군세조례 제6조	
"	3. 국.공유재산의 임대료 징수	거창군재무회계규칙 제4조	
"	4. 읍.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	거창군재무회계규칙 제4조	
"	5.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 사무	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	
"	6. 불용품매각처리 (단, 정수물품 제외)	거창군물품관리조례 제4조	
"	7. 군유잡종재산 대부 허가	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, 시행규칙 제2조	
"	8. 토지건축물 과세대장 작성	지방세법 제192조 제2항, 동법 시행규칙 제82조	
지 적 과	1.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	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	
사회복지과	1. 생활보호대상자 조사	생활보호법 제17조	
"	2. 생활보호 양곡.부식.연료비 지급	생활보호법 제7조	
"	3.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사업의 시행	생활보호법 제11조	
"	4.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	의료보호법 제6조 제2항	

소 관 별	위임사무명	근거 및 적용법규	비 고
사회복지과	5. 요보호아동 수용범 퇴소	아동복지법 제11조	
“	6. 매장.화장.개장신고	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	
“	7. 어린이 놀이터 관리	행정지시	
환경위생과	1 청소인부 및 청소차량 관리.운영	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9조	
“	2. 특별청소지역내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	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6조	
“	3. 분뇨 불법투기 단속	수질환경보호법 제29조	
“	4. 폐기물 투기 지도.단속	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30조 동 시행규칙 제13조	
“	5. 공중화장실 관리.운영	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	
“	6.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	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, 제11조, 건축법 제71조 동시행규칙 제117조	
“	7.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신고	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3조, 동법 시행규칙 제73조	
산 업 과	1. 농지전용 신고	농지법 시행령 제41조	
“	2. 다년성 식물(관상수) 재배지 관리	농지법 제2조,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	
산 림 과	1. 녹지 사업지 보수관리		
“	2. 입산허가	산림법 제98조, 제125조	
“	3. 산림이의 임목벌채 (임의벌채) 신고	산림청 예규 제345호 ('90.7.14), 사유림임목벌채 실시요령 제6조 제3항, 제18조	
“	4. 가로수 유지 관리	가로수관리규정 제4조	
건 설 과	1. 재해사실 확인증명	사실확인서 발급지침 (내무부 예규 제718호)	
“	2.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.징수	하천법 제33조	
“	3. 도로 점용료 부과.징수	도로법 제43조 제2항	
“	4. 접도구역 관리	도로법 제50조	

소관별	위임사무명	근거 및 적용법규	비고
도 시 과	1. 광고물 관리 (단 고속도로변 광고물, 광고탑, 옥상광고물, 대형환경정화용 광고물은 제외)	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	
“	2. 바닥면적 합계가 50㎡이내의 신고 (증축, 개축, 재축, 대수선)	건축법 제71조 동 시행령 제117조 제4항	
“	3. 농업용 건축물의 건축신고 - 도시계획구역안의 읍지역 연면적 합계가 100㎡이하인 주택, 연면적 200㎡미만인 축사, 창고, 작물 재배사 -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·면지역에서 연면적 합계가 100㎡이하인 주택, 연면적 200㎡이하인 창고, 연면적 합계가 400㎡이하인 축사, 작물재배사	건축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	
“	4. 용도변경 신고 (건축법 제9조 제1항,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, 제3항에 해당하는 신고사항)	건축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	
“	5.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㎡이하	건축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	
“	6. 소규모 건축물의 신고 - 연면적 합계가 85㎡이하인 단독주택 - 건축물 높이를 3m이하로 증축 - 건축사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축사	건축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	

소관별	위임사무명	근거 및 적용법규	비 고
도 시 과	7. 주택상환금 징수	거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13조	
“	8. 용벽등 공작물의 축조신고 (건축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에 해당되는 신고사항)	건축법 제71조 제3항	
“	9.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(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)	건축법 제71조 제4항	
“	10.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(무허가, 무신고, 위반건축물)	건축법 제5조 제1항	
“	11. 도시계획구역내 무허가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단속 및 조치	도시계획법 제4조 제78조, 제97조	
“	12. 간이상수도의 관리	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제4조 내지 제8조, 제10조 내지 제12조	
보 건 소	1. 대마재배 허가	대마관리법 제5조, 동법 시행규칙 제5조	